

의안번호	2207475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5.2.18.
추계번호	25D05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61억 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2,307억 7,700만원(연평균 461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안 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46,102	44,817	45,706	46,613	47,539	230,777	46,155

주: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2027년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채용시기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시·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시·도의회의원 정수로 함 ※(현행)시·도의회, 시·군·구 자치구의회 구분없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
 - 현행법령¹⁾은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추계기간 동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연봉은 2025년 일반임기제 연봉액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으로 구성되며, 계약기간 동안 기본연봉액에는 변화가 없고 매년 성과연봉액에 변동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지방의회별 각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연봉 등급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25년 연봉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 각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지방의회 청사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²⁾을 적용
 -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분야별 지출규모 중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준용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4.11.)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	1.9%	1.9%	1.9%	1.9%	1.9%
기관부담금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인당 자산취득비	5,010천원	5,120천원	5,228천원	5,337천원	5,449천원	5,558천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임

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 수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시·도의회의원 정수로 하는 경우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419명임
 - 시·도의회 의원 정수는 총 877명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³⁾에서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5급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는 증원 대상에서 제외

[표 2]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단위: 명)

구 분	의원정수(a)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b)	증원가능 정수 (c=a-b)	구 분	의원정수(a)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b)	증원가능 정수 (c=a-b)
서울	112	56	56	경기	156	78	78
부산	47	23	24	강원	49	24	25
대구	32	16	16	충북	35	17	18
인천	40	20	20	충남	48	24	24
광주	23	11	12	전북	40	20	20
대전	22	11	11	전남	61	30	31
울산	22	11	11	경북	61	30	31
세종	20	10	10	경남	64	32	32
				합 계	832	413	419

주: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나. 인건비 등

(1) 보수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6급 2025년 연간 보수는 [표 3]과 같음
 -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⁴⁾
 -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9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월 60,000원)
 -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영⁵⁾
 - 연가보상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표 3] 일반임기제 6급상당 지방공무원 보수: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임기제 6급상당 지방공무원	66,907	1,800	3,900	72,607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5년 연봉액을 기초로 추계기간 동안 연간 보수와 공무원연금 등 기관 부담금을 포함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의 인건비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추계기간 동안 정책지원관의 연봉액은 2025년 연봉액에 국회예산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 인건비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

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5)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급보조비: 185,000원

[표 4]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당 인건비 소요(a)	보 수	75	77	78	80	81	-
	기관부담금	10	10	10	11	11	-
	소 계	85	87	89	90	92	-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b)		419	419	419	419	419	-
계(c=a×b)		35,737	36,437	37,159	37,897	38,650	185,880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본경비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의 분야별 지출 규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력운영비의 23.0%⁶⁾
- [표 4]에서 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지방자치단체 평균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고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5]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8,220	8,380	8,547	8,716	8,889	42,7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자산취득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7년에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적용하였을 때, 1인당 51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6) 인력운영비 38조 2,196억원, 기본경비등 8조 7,893억원

[표 6]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7~203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2,145	-	-	-	-	2,1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61억 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307억 7,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35,737	36,437	37,159	37,897	38,650	185,880
	기본경비	8,220	8,380	8,547	8,716	8,889	42,752
	자산취득비	2,145	-	-	-	-	2,145
	합 계	46,102	44,817	45,706	46,613	47,539	230,7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